

정보통신표준화 분야의 IPR 이슈에 대한 유럽의 논의 동향

강부미 · 손홍 · 진병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bmkaug@tta.or.kr · hsohn@tta.or.kr · bmchin@tta.or.kr

A IPR Issues relating to the ICT Standardization in the EU

Boo-Mi, Kang · Hong Sohn · Byoung-Moon, Chin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요약

지난해 유럽의 표준화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 SOS Interop이라는 흥미로운 워크샵이 개최된 바 있다. 이 워크샵에는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등 기업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유럽지적재산권기구(EPO)가 참여하는 등 범글로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제2차 SOS 워크샵에서는 표준에 있어서의 IPR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ETSI에 IPR Committee를 제안한 바, 제26차 ETSI 총회(2005.11)에서 이를 받아 들여 ETSI IPR 애드혹이 신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이동통신분야에서 로얄티 가중으로 인한 사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SOS 워크샵과 ETSI IPR 애드혹에서의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 서언

일반적으로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기술 발전으로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 그런데, 이러한 특허권자의 과중한 권리보호가 때로는 산업발전의 하나의 장애로 되기도 하고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지출 부담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분야에서 추가기술(예, MP3 플레이어, 카메라, DMB 수신기 등)이 첨가되면서 로얄티의 누적은 단말기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가져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소비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 시장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단말기의 가격은 그렇지 않음은 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행사 내지 권리보호가 그 원인 중 하나임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²⁾

지난해 유럽표준화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에서는 흥미로운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다. SOS Interop(Standards, Open Standards and Interoperability)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표준과 IPR(특히 특허)의 관련성이 밀접해지면서 발생한 IPR 쟁점³⁾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자리이었다.

1) 특허법 제1조 참조.

2) 2004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주요 산업의 매출대비 로얄티 비율이 반도체(12%), 디지털TV(15%), DVD플레이어(10~15%), GSM(7~10%)이며, CDMA 관련해서는 약 7천억원을 지불하였다고 한다.

3) 여기에서의 IPR 쟁점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논의되

SOS 워크샵은 세차례(2005.5, 2005.9, 2006.2) 개최되었으며 유럽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아시아 기업들도 참여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EPO(European Patent Organization)도 참여하는 등 범글로벌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제2차 SOS 워크샵에서는 가장 이슈가 되는 IPR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IPR Committee 설립을 제안한 바, 제46차 ETSI 총회(2006.11)에서 IPR 애드혹이 설립되었다.

이하에서는 먼저 표준과 IPR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본 후, SOS 워크샵의 주요 논의 사항과 4차례⁴⁾ 개최된 ETSI IPR 애드혹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II. 정보통신표준과 IPR

표준화는 일반적으로 기술개발을 전제로 하며, 기술개발은 곧 지적재산권과 관련을 갖는다. 표준은 기술의 공개와 시스템간의 호환성(Interoperability)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신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적재산권은 그 권리자에게 기술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신기술 개발 유도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표준으로 확정된 기술에 특정 지적재산권이 부여됨으로써 표준 본래의 목적과 상반되는 즉 지적재산권에 독점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

었으나, 이하에서는 특허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4) 1차회의(2006. 1. 10~11), 2차회의(2.22~23), 3차회의(3.22~23), 4차회의(5.10~12).